중고차 매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이 콘텐츠에서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과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방법과 이전등록 방법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도 중고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 개인 간에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경우 주의사항, 노후차량 폐차방법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1
1.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4
1.1. 등록원부 및 자동차 성능 확인 4
1.1.1. 자동차등록원부 확인하기 4
1.1.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5
1.2.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 7
1.2.1.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하기 7
2. 중고차 구입하기 9
2.1. 중고차 구입 9
2.1.1. 중고자동차 대금 지급 9
2.2. 보험가입 11
2.2.1. 자동차보험 가입하기 11
2.2.2. 자동차보험 승계받기 14
2.3.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15
2.3.1. 자동차 이전등록하기 15
2.3.2.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의 거부 16
2.4. 중고차 관련 세금 17
2.4.1. 중고차 구입 시 세금내기 17
2.4.2. 취득세 감면받기 18
3. 중고차 처분하기 21
3.1. 중고차 팔기 21
3.1.1. 중고자동차 팔기 21
3.2. 중고차 폐차하기 23
3.2.1. 중고차 폐차 23
3.2.2. 노후경유차량 폐차지원 25
3.2.3. 자동차 말소등록 30
3.3. 자동차 세금 33
3.3.1. 자동차세 돌려받기 33
4. 중고차 분쟁 해결하기 35
4.1. 중고차 매매 분쟁 35
4.1.1. 중고차 매매 분쟁 해결하기 35

1.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

1.1. 등록원부 및 자동차 성능 확인

1.1.1. 자동차등록원부 확인하기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의 중요성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중고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이 외에도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구동축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함),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제6항).

>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방법**
>
> ▪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 열람 신청서를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5호서식).
>
> ▪ 직접 차량등록사무소로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은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도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 확인하기

▪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

사고이력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의 사고이력은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 자동차 사고이력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또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http://www.carhistory.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 확인하기

▪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므로(「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되지는 않았는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1.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중고자동차의 성능 및 상태 점검하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침수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 점검장명 촬영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일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82호서식).

> ※ 이를 위반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발급해 줘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의 내용을 기록·관리·보존해야 하며, 이를 자동차민원 관리사업자포털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9항, 제10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1호).

- 자동차 기본정보
- 자동차 종합상태
-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 자동차 세부 상태
-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매수인이 가격조사·산정을 원한 경우로 한정)

주행거리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는 성능이나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본문),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 다만, 고장이나 파손 등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행거리 변경이 가능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6).

순번	주행거리 변경 사유	요건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 필요
2	침수·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 필요
3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 필요
4	위의 1. 또는 2.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6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결과 확인

▪ 자동차는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검사 및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7항).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8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따라서 중고차 구입 전 구입하려는 자동차가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의 대상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고자동차의 교체·환불 재매입명령 기준

·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이하 "교체 등"이라 함) 명령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1. 교체: 자동차제작자가 교체등 대상 자동차와 규모별 세부분류 및 유형별 세부분류가 동일하게 분류되는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
2. 환불: 자동차제작자가 1.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다만,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교체 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

3. 재매입: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

1.2.1.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하기

중고자동차 사기피해 예방 방법

중고자동차 시세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의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자동차의 시세는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http://www.ecar.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판매자와 거래하기

▪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업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본문).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종사원은 그 신분을 표시해야 하므로(「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3호),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의 직원인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이 그 신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장 6개월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아목).

※ 중고자동차 판매 업체나 직원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직원인지의 여부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http://carku.co.kr) 또는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자와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의 차량이 맞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예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인 간 직거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당하는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특약을 활용하면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서상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
>
> ▪ 특약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협의한 사항(예: 침수차로 확인된 경우 100% 환불한다,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배상한다 등)을 계약서에 적어두면 됩니다.

수수료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 외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순번	구분	내용
1	매매알선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4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알린 경우만 해당)

>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사기피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 해결기준과 계약해제, 환불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중고차 분쟁 해결하기-중고차 매매 분쟁-중고차 매매 분쟁 해결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중고차 구입하기

2.1. 중고차 구입

2.1.1. 중고자동차 대금 지급

중고자동차 대금 지급하기

중고자동차 대금 지급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 보다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뒤에 해당 차량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이나 조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고자동차 구입 시 소득공제

▪ 중고자동차 구입 시 현금 또는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동차 대금 지급 방법	소득공제 여부
현금	▪ 2017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별표 3의3제5호노목).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5항).
신용카드	▪ 2017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단서). ▪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5항).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새차를 구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 중고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면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보험가입

2.2.1. 자동차보험 가입하기

자동차보험의 종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를 말함, 이하 같음)과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제3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2조제2항).

구분	내용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대인배상 Ⅰ과 대물배상) 보험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보험

※ 자동차보유자란?

▪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3호).

의무보험 가입하기

의무보험 가입의무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이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함)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구분	책임보험금
사망한 경우	▪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배상)
부상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배상]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또한,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아울러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배상책임한도(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를 초과한 피해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

>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

▪ 자동차보유자가 보유한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다음과 같이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의무보험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 이 경우 의무보험의 가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고,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제1항 후단).

- 또한, 의무보험의 가입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면제기간 중에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제2항).

> ※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3항제1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한 제재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

- 시장등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영치증을 발급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시장등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돌려주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자동차 운행의 금지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피견인 자동차 등 의무보험에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3항제2호).

임의보험 가입하기

임의보험 가입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의무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 손해 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의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임의보험(자동차보험)의 상품종류나 보상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공시실-자동차보험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자동차보험 승계받기

자동차 양도 시 보험의 승계

보험계약의 승계

▪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상법」 제726조의4 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1항 본문).

▪ 다만,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를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상법」 제726조의4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1항 단서).

▪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의 이전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이전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726조의4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2항).

추가보험료 청구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가 청구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4항).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승계를 거절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5항).

▪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제48조제6항).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일정기간 동안의 의무보험 승계

▪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부터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새로운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1항).

의무보험 보험료의 반환청구

▪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판 사람은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의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2항).

▪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산 사람이 의무보험의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자동차를 판 사람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자동차를 산 사람은 보험회사에게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제3항).

2.3.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2.3.1. 자동차 이전등록하기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등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자동차 이전등록 방법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구분	제출서류
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매한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이전등록 신청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를 내야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2호).

▪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판 사람(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재

▪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별표 3 제3호).

구분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10만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 50만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2.3.2.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의 거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전손 처리 자동차에 대한 이전신청 거부

▪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는 이전신청이 거부되며,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 수리검사는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리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5호).

> **※ 전손 처리 자동차란?**
>
> ▪ 전손 처리 자동차는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회사가 다음과 같이 분류 처리한 경우의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3호).
>
> 1.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2.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3.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거짓 등록 등의 사유에 의한 이전신청 거부

▪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자동차 이전신청이 거부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7항,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

▹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2.4. 중고차 관련 세금

2.4.1. 중고차 구입 시 세금내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 등

취득세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과세표준(중고자동차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구분		표준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영업용	4%
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2%

※ 등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의 개정으로 2011년부터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이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신차를 구입할 때와 달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참조).

▪ 다만,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의2)

※ 경형자동차란?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① 배기량이 1000cc미만이고, ②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 그 밖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등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사람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2. 취득세 감면받기

취득세 감면 사유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중고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참조).

구분		내용
승용자동차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면제
	2. 1. 외의 자동차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140만원 공제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면제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면제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면제

※ **다자녀 양육자란?**

▪ 다자녀 양육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중고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

구분		내용
승용자동차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50% 경감
	2. 1. 외의 승용자동차	140만원 이하인 경우 경감,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70만원 공제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50% 경감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0% 경감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50% 경감

▪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및 제3항제3호).

전기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

▪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기한	요건	감면액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공제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

대상	면제기한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 √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 √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 ※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합니다.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 중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전방조종자동차	2027년 12월 31일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3. 중고차 처분하기

3.1. 중고차 팔기

3.1.1. 중고자동차 팔기

개인 간에 중고자동차 거래하기

개인 간에 거래 시 주의사항

▪ 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시세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시세를 알아보고 내 자동차의 가격을 정한 뒤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중고자동차의 시세는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전비용 등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것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참조). 다만, 중고자동차의 수리비용 등은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 개인 간에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특약 부분에 계약서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후에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계약서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5호서식).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 자동차를 판 사람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며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 ※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중고차 구입하기-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자동차 이전등록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자동차 팔기

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 시 주의사항

▪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업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본문).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팔고자 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한다면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중고자동차 매매 업체나 직원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직원인지의 여부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http://carku.co.kr) 또는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관리비용 지불

▪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거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와 관리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구분	내용
매매알선수수료	▪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 관리비용은 해당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

▪ 위의 수수료 또는 관리비용 외에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 자동차매매업자가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으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0호).

계약서 작성하기

▪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를 거래할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 등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후에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계약서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6호서식).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를 거래한 사람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사람을 대신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며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를 거래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중고차 구입하기-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자동차 이전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중고차 폐차하기

3.2.1. 중고차 폐차

중고차 폐차하기

중고차 폐차방법

▪ 중고차를 폐차하려는 사람은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를 요청한 다음 그 자동차의 ②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폐차요청하기

▪ 자동차를 폐차하려는 사람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대상자동차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제1항 및 별지 제93호서식).

폐차요청에 필요한 서류
▪ 자동차폐차요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가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는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설정등록이나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의 경우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항).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있음)

▹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제2항).

말소등록하기

▪ 자동차를 폐차요청한 사람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 폐차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로부터 발급받은 폐차인수증명서가 필요하며(「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6항제1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3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를 통해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중고차 처분하기-중고차 폐차하기-자동차 말소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2. 노후경유차량 폐차지원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하기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권고

▪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남은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참조).

조기폐차 권고 대상 자동차 (조건 ①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조건 ②에 해당하는 자동차)	
조건 ①	조건 ②
▪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외의 자동차 ▪ 위의 기준을 유지하는 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	▪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제품의 품질을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특정경유자동차란?**

▪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조기폐차 신청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조기폐차 대상 확인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10일 이내)	➡	폐차장 입고
노후경유차 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지급대상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 / 수령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지방자치단체 / 소유자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확인 신청

▪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는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지 제3호서식].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 열람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검사 결과 증빙서류
-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요건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 검사 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을 한 자동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자동차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자동차소유자의 보조금지급요청 통장 사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idi.or.kr)의 <공시·조회 서비스-차량기준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액

▪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 및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단서 및 별표 2).

1.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

(단위: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경유・휘발유・가스 등)	①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50% (신차)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자동차 (경유)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 기본 및 추가보조금과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 무공해차 추가 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지원 등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2.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로 2004.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기본 및 추가보조금과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 무공해 건설기계 추가 지원 등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3.2.3. 자동차 말소등록

말소등록 신청하기

반드시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 이하 같음)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임의적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제8호, 제9호 및 제7항).

-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차령 등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시·도지사의 직권 말소등록

▪ 자동차 소유자 외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함]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방법

▪ 말소등록은 그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단서).

반납여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O	X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O	X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	X	X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O	X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X	O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서류는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7호서식).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의 제재

▪ 말소등록 신청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는 등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호, 제84조제3항제1호·제5호, 제84조제4항제2호의2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및 자목).

<table>
<tr><th colspan="3">사유</th><th>처벌내용</th></tr>
<tr><td colspan="3">말소등록을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td><td>100만원 이하의 과태료</td></tr>
<tr><td rowspan="4">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대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말소등록을 신청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td><td colspan="2">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td><td>과태료 50만원</td></tr>
<tr><td colspan="2">등록신청대행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td><td>과태료 5만원</td></tr>
<tr><td colspan="2">등록신청대행기간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경우</td><td>과태료 5만원
11일째부터 1일 초과 시 마다
과태료 1만원 추가</td></tr>
<tr><td colspan="2">등록신청대행기간이 105일 이상인 경우</td><td>과태료 100만원</td></tr>
<tr><td rowspan="4">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td><td rowspan="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td><td>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td><td>과태료 5만원</td></tr>
<tr><td>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td><td>과태료 5만원
1일 초과 시 마다
과태료 1만원 추가</td></tr>
<tr><td>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td><td>과태료 50만원</td></tr>
<tr><td colspan="2">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td><td>과태료 20만원</td></tr>
</table>

3.3. 자동차 세금

3.3.1. 자동차세 돌려받기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

자동차세 내기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에 그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및 제128조제1항 본문).

▸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세 납부

▪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를 통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를 판 사람과 함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 ※ 자동차세 일할계산 금액 = 연세액 X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해당연도의 총일수

자동차세를 미리 낸 경우 돌려받기

자동차세 돌려받기

▪ 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선납)한 사람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신청을 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30조제3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제4항 및 별지 제72호서식).

> ※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의 <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중고차 분쟁 해결하기

4.1. 중고차 매매 분쟁

4.1.1. 중고차 매매 분쟁 해결하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의 분쟁

계약해제 및 환불

▪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2.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고지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 및 제3항).

배상 또는 무상수리 등

▪ 중고자동차 판매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2호).

분쟁유형	해결기준
▪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 매매 알선 시 매도인(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	배상
▪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000km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적용합니다.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액 보상
▪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한 경우 ※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합니다.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주행거리 조작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개인간 거래를 통한 분쟁

계약서 확인하기

▪ 중고자동차를 거래하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먼저 특약 등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본 뒤, 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분쟁이 생기는 가장 많은 이유는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약 등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